

1. “S”樂器製造工場의 火災

1) 일반 사항

- 진 물 명 : S 악기 제조공장
- 소재지 : 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 화재일시 : 1987. 1. 27, 06시 13분경
- 발화위치 : 본 공장동 1층 도장작업장 부근
- 화재원인 : 화재 발생건물 통폐로 현장확인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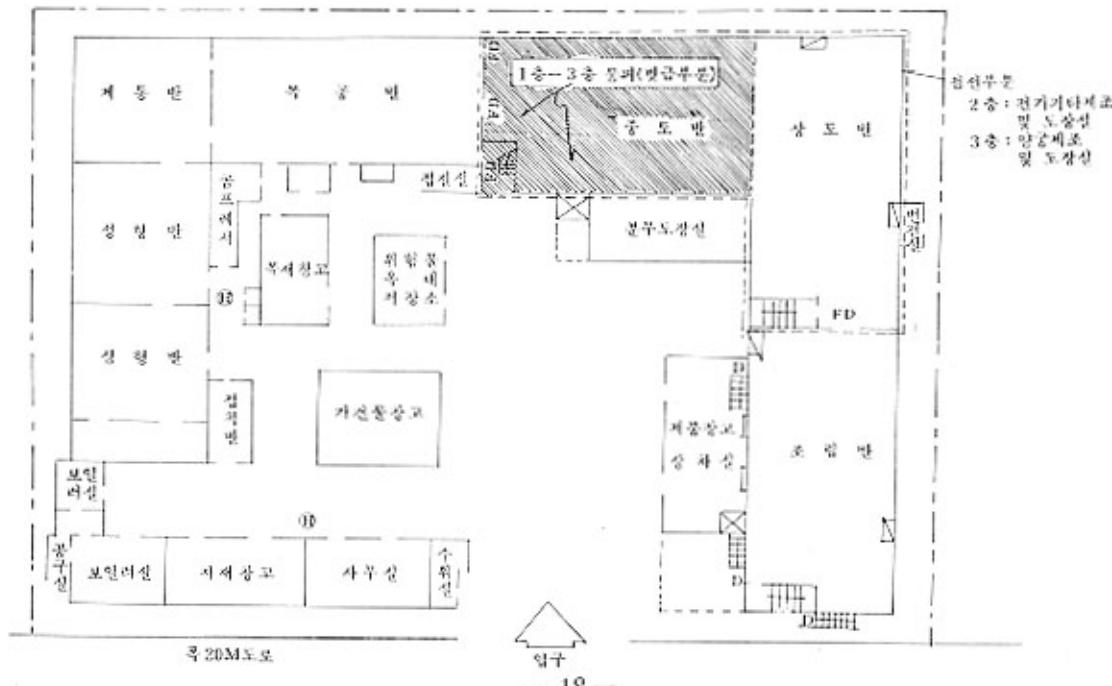
2) 공장 개요

○ 건물개요 : 수출산업공단 내에 위치한 이 공장은 건물 전체 연면적의 합계가 13,305m²로서 그 대부분이 본 공장동이고 나머지 부분은 창고, 사무실건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공장동은 1968년에 신축하였으며 그후 생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78년도에 이어 1979년도에도 증축을 계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구조는 화재가 발생한 천근 콘크리트 슬라브 3층건물 5,252m²를 비롯하여 같은 구조의 3층 건물 3,993m²(지하실 포함)와 철골기둥 및 철골 트러스 위 슬레이트 지붕을 한 구조의 건물이 이어서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건물의 연면적은 12,597m²에 이른다.

“S” 악기 제조공장 건물매치도 fre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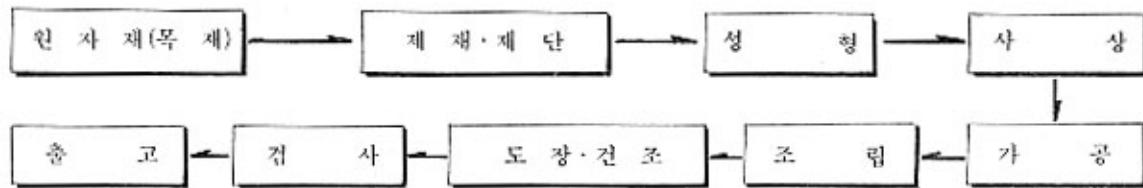


건물 내부에는 그 용도 또는 구조별로 적절하게 방화구획을 하였다. 1층은 중도, 상도 도장 작업장(화재발생 부분)을 가운데로 하고 양측을 구획하여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2층과 3층은 각각 2개소로 구획하였다. 구획 상태는 작업 공정상 불가피하여 구획되지 못한 면적이 규정보다 상당히 초과한 상태였다.

이 외에도 위험물 창고, 목재 창고, 접진실, 가전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장 전체를 보면 대지 면적에 비하여 건물이 조밀하게 들어 있어서 소방차량의 진입 또는 접근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공정개요: 이 공장은 종업원 1,000여명이 목제를 가공하여 현악기를 주로 제조(일부는 양궁 제조)하는 공장으로서 제조작업은 모두 본 공장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작업 공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화재발생 공장(도료류, 신나류 등 위험물 사용)

다른 건물은 사무실 또는 원자재 창고, 위험물 저장 창고 등 부속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3) 화재 상황

불은 도장 작업장 내 상온 건조실 주변에서 발생되었다고 목격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날 발화 장소의 옆 제조작업장(발화 장소와 같은 건물이나, 방화구획이 되어 있어 이번 화재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에서는 2일 후인 “민속의 날” 휴가를 위하여 종업원들이 새벽까지 제조 작업에 여념이 없었으며 도장 작업장 종업원은 일찍 작업을 끝내고 귀가하였으나 남자 종업원 4명(사망자 1명 포함)은 상도 작업장에서 각각 휴식 중에 중도 작업장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06:13) 긴급히 대피하면서 옆 제조장에 알렸다. 동시에 자동화재탐지 설비에 의해 화재를 감지한 경비원이 이를 소방서에 신고함과 동시에 현장 종업원 약 30여명과 함께하여 소화기(ABC분말소화기 약 50여대)와 옥내·외 소화전(옥내 소화전 12개소, 외의 소화전 5개소 설치됨)으로 초기 소화작업을 시도하였다. 곧 이어 동원된 기숙사 종업원 500여명과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합세하여 진화작업을 했으나 화재는 이미 작업장내 신나, 도료 등 인화물과 목재로 된 생산품 등 다양한 가연성 물질에 의하여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진화는 처음에 옥내 소화전과 외의 소화전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전원 공급불량으로 적절한 소화작업과 소방차량의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잠시 후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소화전은 종업원들이 건물 주변과 연결부분 등의 화재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으며 출동한 소방서의 소방대는 소방차량의 소화시설로 진화작업을 전개한 결과 약 2시간 후인 08시경에 완전히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화재가 가장 강력하게 연소한 곳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장소인 도장 작업장은 진화 후 열화로 인하여 1층 약 730m² (3개층 2,190m² 정도)가 붕괴되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층이었기 때문에 대피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사망자 2명은 발화 장소에 인접해 있었다는 사실 뿐 사망에 어떠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는 없다.



〈1층~3층 부분이 화재로 폭싸 불괴된 현상〉



〈내부에서 본 불괴된 상태〉

※ 충동 장비와 출동 인원

- 차량 : 소방차량 54대 (고가사다리차, 지휘차 포함)
- 인원 : 소방관 - 150여명, 경찰관 - 80여명

4) 피해 상황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7명 (부상자는 경상임)

○재산피해 : 약 13억원

건물 : 5억원 추정 ($13,305\text{ m}^2$ 중 $5,252\text{ m}^2$ 소실)

기계 : 3억원 추정

동산 : 5억원 추정

5) 방재시설 상황

가. 자동화재탐지 설비

공장내 전체 전기에 설치되어 있으나 간막이가 되어 있는 곳에 화재감지기 일부 미설치되어 있었고 감지기 배선 방식도 불량(송배전 방식이 아님)한 것으로 지적(86. 6. 25일자 화보협회 점검시 지적)되었으나 화재 발생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화재 수보설비는 설치되어 있었으나 잦은 오동작 등으로 인하여 조작스위치를 수동상태로 놓아 두었기 때문에 이용되지 못하였다.

나. 소화기

본 공장동에 ABC급 분말소화기 51대, BC급 분말소화기 33대, 대형 분말소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었고 창고 등 부속 건물에 ABC급 분말소화기 4대, BC급 분말소화기 8대, 대형 분말소화기 2대 등, 전 공장에 양호한 상태로 분산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화재시 약 50여대를 동원 초기 진화작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

다. 옥내·외 소화전

본 공장동에 옥내 소화전 시설과 옥외 소화전 시설이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옥내 소화전은 본 공장동 각층 4개소씩 3개층에 모두 12개소 설치되어 있고 옥외 소화전은 건물 외관에 5개소 설치되어 있다.

수원은 전면 옥상에 20m³의 고가 수조가 시수에 의해 금수를 받아 저장하였다가 20HP의 원심 펌프에 의해 각 소화전으로 공급하도록 설치하였으나 전원은 단절한 상태로 유지하였고 소화전 호스함 앞에도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유지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보협회 정기점검시 지적된 사항임) 이날도 초기에 소화를 하려고 소화전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처음에는 전원 공급의 불량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잠시 후 정상 작동으로 화재 확산 방지에 사용되었다.

6) 부보 상황

이 공장은 화재발생 당시 건물과 기계시설물의 보험금액 약 24억원(건물 18억, 기계 16억)이 신세 특약부 화재보험으로 화보협회에 가입되어 있었고 자재 및 세품이 J화재 등 원수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다.

7) 문제점

가. 소방시설

소방시설은 항상 유사시에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하나 오동작을 우려하여 전원을 단절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초기 전화가 지연되었다.

나. 방화 구획

본 공장동은 1,000m²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건물이나 작업 공정상 불가피한 이유로 구획 한 면적이 규정보다 상당히 초과되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는 그 만큼 비례하여 증가되었다.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도장 작업장-일반취급소)는 별도로 구획하여야 할 부분인데도 구획하지 않아 연소화재가 되거나 화재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방화구획된 부분은 연소가 저지되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다. 위험물 및 가연물

위험물 및 가연물이 전 공장에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재의 연소열에 의하여 건물이 붕괴되었다.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는 별도로 구획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재 등에 대비 항상 정리 정돈을 해야 한다.